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415
----------	-------

발의연월일 : 2023. 11. 15.

발 의 자 : 장혜영 · 강은미 · 배진교
심상정 · 류호정 · 윤미향
강성희 · 이은주 · 박완주
홍기원 · 기동민 · 진성준
도종환 · 이소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 등의 특수활동비는 이렇다 할 증빙없이 사용되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올해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54억 원에 달함. 검찰의 경우에도 특수활동비가 연간 8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물론 이는 검찰 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에 특수활동비 등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특수활동비 등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하 “특수활동비”라 한다)
2.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특정업무경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이하 이 조에서 “특수활동비등”이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특수활동비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집행지침과 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포함한 특수활동비등의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행지침과 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활동비 등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4조의2(특수활동비 등의 관리)</u> <u>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u> <u>1.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하 “특수활동비”라 한다)</u> <u>2.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특정업무경비”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u> <u>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u>

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이하 이 조에서 “특수활동비등”이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특수활동비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집행지침과 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포함한 특수활동비등의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행지침과 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